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의안 번호	2971
----------	------

2025. 9. 1.
주택공간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8. 11. 유정희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5. 8. 14.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2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2025. 9. 1. 상정·의결)

II. 제안설명 요지 (유정희 의원)

1. 제안이유

-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으로 디지털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서울시가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시민들이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윤리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시민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윤리적이며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공지능 리터러시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16조).

Ⅲ. 검토보고 요지 (윤은정 수석전문위원)

- 이 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은 서울시가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시민이 창의적이고 윤리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조례 제정의 배경

- 최근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약 63.5%가 생성형 AI를 사용한 경험이 있어 미국(39.6%)보다 약 1.6배 높은 수준이나, 업무시간 단축 효과는 미국(5.4%)에 비해 낮게(3.8%) 나타남에 따라¹⁾, 인공지능 활용의 높은 관심도에 비해 역량은 아직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정부는 지난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을 제정하여 인공지능의 올바른 이용방법과 안전 환경 조

1) “AI의 빠른 확산과 생산성효과: 기계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NO.2025-22, 2025.8.18.) 인용 및 재구성

성을 위한 교육 등을 규정하여(검토보고서 붙임1 참고), 국가적으로도 인공지능활용에 관한 교육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에 관하여 특화된 조례는 부재한 상황으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제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임2).

나. 조례안의 주요내용

- 조례안은 총 16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수립,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업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등임.

< 조례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

구 분	조 항	내 용
안 제1조 ~ 안 제4조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함양 ·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 추진
안 제5조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단계별·분야별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 전문인력 양성, 자원 조달, 협력체계 구축 등
안 제6조 ~ 안 제14조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 교육을 위한 지원 사항 자문 등 · (구성) 15인 이내 : 공무원, 시의원, 외부전문가 등 · (임기) 2년, 연임가능 · (위원의 해촉, 제척·기과·회피) 기본원칙 준수 ·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기본조례 준용 · (존속기한) 시행일부터 5년
안 제15조 ~ 안 제16조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정책 동향, 프로그램 연구, 전문인력 양성, 홍보 등

(1) 조례안의 제명(제명)

- 조례안의 제명에서는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³⁾”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2)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기반을 마련하였음.
 3) “인공지능 리터러시” 용어를 제명으로 하는 법령은 없으나, 유사한 사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음. (울산광역시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제명에 사용하고 있음.)

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 자치법규에 외래어는 쓰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⁴⁾을 감안하여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등⁵⁾ 한글 제명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음⁶⁾).

(2)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인공지능 리터러시와 관련된 용어를 각각 정의하고 있는데,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기술’의 경우 법과 기본조례 등 관련 법령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인공지능 리터러시’의 경우 ‘인공지능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의 법적 정의가 부재한 상황⁷⁾에서, 국내외 연구 등 각기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므로 제명과 함께 일괄하여 용어를 수정(“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국내외 연구 중 인공지능 리터러시의 정의 비교 >

구분	출처	인공지능 리터러시 정의(원문 인용, 번역)
국내	「AI 시대의 리터러시 특성에 관한 연구」 (이유미, 2021)	AI로 인해 변화하는 문화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적응하는 능력

4) “2022 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 p.395(법제처)

“외래어와 외국어는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바꾸어 쓸 우리말이 없거나 이미 관행적으로 굳어진 외래어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쓸 수 있다.(외래어·외국어는 될 수 있으면 쓰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법제처와 국립국어원 등 전문 기관에 자문한 후 사용한다.)”

5) 국회도서관의 “EU 인공지능법” 번역본에 따르면, ‘AI literacy’ 를 ‘인공지능 문해력’ 또는 ‘인공지능 활용 능력’ 으로 번역하고 있음.

6) 참고로 “리터러시” 는 일반 시민에게 다소 낮은 외래어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이를 제명에서 삭제할 경우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가 되어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되어 조례 제정 목적의 방향성이 모호해질 수도 있겠으나,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표현되어 시민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임.

7) EU의 인공지능법에서는 ‘AI literacy’ 를 “이 규정의 맥락에서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제공자, 배포자 및 피침해자가 정보에 입각하여 인공지능시스템을 배포하고 인공지능의 기회, 위험, 인공지능이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피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지식 및 이해를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음.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포털_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외국법률번역본 제3조(정의))

구분	출처	인공지능 리터러시 정의(원문 인용, 번역)
	「대학생을 위한 AI 리터러시 척도 개발」 (임철홍 외 2명, 2024)	개인이 AI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협업하며, 온라인, 가정 및 직장에서 AI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역량
국외	「What is AI Literacy? Competencies and Design Considerations」 (Long & Magerko, 2020)	개인이 AI 기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AI와 효과적으로 소통·협업하며, 온라인, 가정 및 직장에서 도구로서 AI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일련의 역량
	「Conceptualizing AI literacy: An exploratory review」 (Ng 외, 2021)	사람들이 AI 기반 기술을 통해 디지털 세계에서 살아가고, 배우며, 일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능력

(3) 기본계획(안 제5조)

- **안 제5조**는 시장에게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3년)과 시행계획(매년)을 수립·시행토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기본방향, 단계별·분야별 사업 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등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에서는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서울시가 수립해 본 경험이 없고, 타 지자체 사례도 부재한 상황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이하 “기본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둬으로써 효율적 행정을 기할 수 있을 것임.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제6조(기본계획)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p>2.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단계별 · 분야별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p> <p>3.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된 법· 제도의 개선</p> <p>4.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전문인 력의 양성</p> <p>5.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재원의 조달</p> <p>6.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협력체 계 구축</p> <p>7. 그 밖에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지원 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 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③ (제정안과 같음)</p> <p><u>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 른 시행계획은 각각 「서울특별시 인공지 능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 여 수립할 수 있다.</u></p>
---	--

○ 향후 디지털도시국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시 방향(안 제5조제2항제1호)과 단계별 프로그램 개발(안 제5조제2항제2호) 등에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⁸⁾와 교육부⁹⁾ 등 중앙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리터러시 세부 요소¹⁰⁾(이해·분석·활용·윤리)를 바탕으로 실행·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 인공지능 리터러시 세부 요소 >

구 분	인공지능 리터러시 세부 요소
인공지능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 구분하기 · 지능(인간, 동물 및 기계)에 대한 이해(비교)하기

8) “인공지능 3대 강국(AI G3)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AI 혁신의 청사진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4.9.26.)

9)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교육부 발표자료(2023.2.23.)

10) “사회과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방법에 대한 탐색적 연구”(정문성 외1명, 2023)

구 분		인공지능 리터러시 세부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다양한 기술 식별하기 ·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 구분하기
인공지능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의 강점과 약점 식별하기 · 인공지능의 영향 비판적 평가하기
인공지능 활용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가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 컴퓨터가 추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기
	머신러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머신러닝 학습 단계 이해하기 · 인공지능에서의 인간 역할 인식하기 · 기본 데이터 이해하기 · 데이터로부터 학습한다는 것 인식하기 · 데이터 비판적 해석하기
	로보틱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이 물리적으로 행동하고 반응할 수 있다는 것 이해(로봇 공학)하기 · 컴퓨터가 센서를 사용하여 세상을 인식한다는 것 식별하기
인공지능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를 둘러싼 주요 윤리적 문제(예: 개인 정보 보호, 잘못된 정보, 윤리적 의사 결정, 다양성, 편향, 투명성, 책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식별하고 설명하기

*출처: 사회과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방법에 대한 탐색적 연구(정문성 외1, 2023), Long & Magerko, 2020: 4-7 재구성

(3)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안 제6조~안 제14조)

-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¹¹⁾.
- 자문위원회 역시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운영 경험이 없고, 자문 대상 안건의 종류와 건수를 명확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본 조례에 따른 ‘인공지능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공지능 정책을 통합적으로 심의·자문할 수 있음과 동시에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1)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준수하였음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p>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관련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의 정책 및 프로그램의 점검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p><신 설></p>	<p>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제정안과 같음)</p> <p>1. ~ 5. (제정안과 같음)</p> <p>③ 시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4) 지원사업(안 제15조)

- 안 제15조는 시장이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의 국·내외 동향 등 조사,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홍보 등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각 자치구와 법인 또는 단체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p>제1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외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정책 동향 및 제도 조사 2.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시험 및 평가

3.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4.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관련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자치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현재 서울시(투자출연기관 포함)는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총 11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 8개 사업이 리터러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검토보고서 붙임2), 이들 사업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의미가 있음.

< 서울시(투자출연기관 포함) 시민대상 인공지능 교육 현황 >

구분	부 서	교육과정	교육대상	리터러시 포함여부
서울시	디지털정책과	디지털 배움터	일반시민	X
	일자리정책과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	청년	X
	첨단산업과	전문가초청교육, 생성형AI교육	일반시민	○
		창업관련 2개 과정	청년	일부포함
	소상공인정책과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중장년	○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센터 AI교육(23개 센터)	학생 (일반시민 일부)	일부포함
평생교육과	온라인강의(24개), 문해교육 프로그램	일반시민	○	
투자출연기관	서울AI재단	어디나 지원단	어르신	X
	서울경제진흥원	하이서울 기업 AI역량교육	일반시민	○
	서울여성가족재단	AI활용, 기업실무, 보안, 인턴교육	여성	일부포함
	서울시50플러스재단	AI활용 직업훈련	중장년	○

*출처: 디지털도시국 디지털정책과 AI행정정책팀 조사·제출자료('25.8.26.)

- 다만, 이 조례안가 제정되면 현재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리터러시 교육을 대상별(청년·중장년·고령층 등)로 보다 체계화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다.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급속한 인공지능 확산 속에서 시민들이 인공지능을 비판적·창의적으로 이해·활용하고, 윤리적·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조례안에 사용된 외래어 “리터러시”의 용어 정비, 시행중인 기본조례와의 기본계획 연계, 위원회 설치의 통합 운영,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조례안은 시민 대상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의 제도적 근거를 우선 마련함으로써 시행 과정에서 효과성과 정책 수요를 검증하고, 그 결과 드러나는 증복·보완 과제를 평가함으로써 향후 기본조례와의 정책 연계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기본조례에 따른 세부 분야별 조례로 정리하여, 기본조례가 종합계획을 제시하고 본 조례안이 교육 분야의 세부 실행계획을 특화·보완하는 구조로 체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조례안에 사용된 외래어 “리터러시”를 “활용 능력”으로 일괄 정비함. (안 제명, 안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중)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자문위원회를 같은 조례에 따른 인공지능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계함 (안 제5조제4항, 안 제6조제3항)

VI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971
----------	------------

제안일자 : 2025. 9. 1.

제안자 : 주택공간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안에 사용된 외래어를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유사 분야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위원회와 연계함.

2. 수정의 주요내용

- 조례안에 사용된 외래어 “리터러시”를 “활용 능력”으로 일괄 정비함
(안 제명, 안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중)
- “인공지능 리터러시”의 정의를 삭제함 (안 제2조제3호)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자문위원회를 같은 조례에 따른 인공지능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계함 (안 제5조제4항, 안 제6조제3항)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로 한다.

안 제1조 중 “리터러시”를 “활용 능력”으로 한다.

안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리터러시”를 각각 “활용 능력”으로 한다.

안 제4조 중 “리터러시”를 “활용 능력”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중 “리터러시”를 각각 “활용 능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각각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안 제6조제1항 중 “리터러시 교육에”를 “활용 능력 교육에”로,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를 “활용 능력 교육 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리터러시”를 각각 “활용 능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안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중 “리터러시”를 각각 “활용 능력”으로 한다.

안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리터러시”를 각각 “활용 능력”으로 한다.

안 제16조 중 “리터러시”를 “활용 능력”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서울특별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지원</p> <p style="text-align: center;"><u>조례안</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이 인공지능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3. “인공지능 리터러시”란 인공지능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p> <p>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p>	<p>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p> <p style="text-align: center;"><u>조례안</u></p> <p>제1조(목적) ----- <u>활용 능력</u> ----- ----- -----.</p> <p>제2조(정의) ----- -----.</p> <p>1.·2. (제정안과 같음)</p> <p><u><삭 제></u></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u>활용 능력</u> ----- ----- -----.</p> <p>② ----- <u>활용 능력</u> ----- ----- -----.</p> <p>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 <u>활용 능력</u> ----- -----.</p> <p>제5조(기본계획) ① ----- <u>활용 능력</u> ----- -----</p>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단계별·분야별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
4.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5.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재원의 조달
6.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략)

<신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② -----
-----.

1. ----- 활용 능력 -----

2. ----- 활용 능력 -----

--
3. ----- 활용 능력 -----

4. ----- 활용 능력 -----

5. ----- 활용 능력 -----

6. ----- 활용 능력 -----

7. ----- 활용 능력 -----

③ (제정안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각각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 활용 능력 교육에 -----

----- 활용 능력 교육 자문위원회 -----
-----.

② -----

• 의결한다.

1. (생략)
2.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관련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의 정책 및 프로그램의 점검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신설>

제7조(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관련 공무원
2. (생략)
3.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정책 동향 및 제도 조사
2.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시험 및 평가

-----.

1. (제정안과 같음)
2. ----- 활용 능력 -----

3. ----- 활용 능력 -----

4. ----- 활용 능력 -----

5. ----- 활용 능력 -----

③ 시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구성) ①·② (제정안과 같음)

③ -----
-----.

1. ----- 활용 능력 -----

2. (제정안과 같음)
3. ----- 활용 능력 -----

제15조(지원사업) ① ----- 활용 능력 -----
-----.

1. ----- 활용 능력 -----

2. ----- 활용 능력 -----

3.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관련 전문인
력 양성 및 교육

4.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관련 홍보

5. (생략)

② (생략)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
단체, 관련 법인·단체 등과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3. ----- 활용 능력 -----

4. ----- 활용 능력 -----

5.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제16조(협력체계 구축) ----- 활
용 능력 -----

-----.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이 인공지능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을 위한 단계별·분야별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
4.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5.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을 위한 재원의 조달
6.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각각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관련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의 정책 및 프로그램의 점검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관련 시 공무원
2.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3.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공지능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4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1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정책 동향 및 제도 조사
2.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시험 및 평가
3.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4.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관련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자치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